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의3서식] <개정 2022. 3. 18.>

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합 계 표

사업연도 (과세기간)	2023-01-01 ~ 2023-12-31

1.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(공익법인등)	① 단 체 명	사단*****	② 대 표 자	강**
	③ 사업자등록번호 (고 유 번 호)	321-82-006**	④ 전화번호	010-5497-****
	⑤ 소 재 지	경기도 안산시 *****		
	⑥ 유 형 (해당란에 √)	☐정부등 공공 ☐교육 ☐종교 ☐사회복지 ☐자선 ☐의료 ☐문화 ☐학술 ☑기타		

2.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

(단위: 원)

⑦ 구 분 / ⑪ 기부자	⑧ 합 계		⑨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(종전 법정기부금)		⑩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3항제 1호에 따른 기부금 (종전 지정기부금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법 인	2	870,000	0	0	2	870,000
개 인	23	4,365,000	0	0	23	4,365,000
합 계	25	5,235,000	0	0	25	5,235,000

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제3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2024 년 05 월 13 일

제 출 인 강** (서명 또는 인)

안산 세무서장 귀하

작 성 방 법

1.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2. ⑥ 유형란: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공익법인 등)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.
3. ⑧ ~ ⑪ 란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.
4.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(「법인세법」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)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